

그러면 本 條例廢止案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께서 異議가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더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서울特別市油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異議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서울特別市遺棄動物保護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2時 15分)

○委員長 白昌鉉 다음은 오늘의 議事日程 마지막인 第7項인 서울特別市遺棄動物保護에關한條例의 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專門委員 成泰辰 안녕하십니까?

1992年 1月 24日字로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遺棄動物保護에 關한 條例案에 대하여 檢討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動物을 적정하게 保護하고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1年 5月 31日 法律第 4379 號로 動物保護法이 制定 公布되었습니다. 同法 第 7 條第 1 項에는 市長, 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道路, 公園 등의 公共場所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動物 즉 遺棄動物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적정하게 保護 管理될 수 있도록 필요한 保護措置를 해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同 第 5 項에는 市長, 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遺棄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保護措置에 소요된 經費에 상당하는 金額을 청구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同 第 6 項에는 保護措置方法이나 經費의 算出 기타 保護措置에 관하여는 市·道의 條例로 定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特別市遺棄動物 保護에關한條例를 制定하는 自治區에서 遺棄 動物保護에 ick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本 條例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檢討報告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昌鉉 專門委員 檢討事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條例案件에 대해서 委員 여러분께서 意見이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權赫柱委員님께서 發言을 申請해 주셨기 때문에 權赫柱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柱委員 權赫柱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遺棄動物保護에關한條例案에 대하여 몇 가지 質問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別표 1의 所要經費, 算出基準表 第 9 條 및 第 10 條第 1 項과 關하여 보게 되면, 두번째 管理人에 대한 手當 그 다음에 세번째 委託保護手數料, 네번째 포획인부의 노임 등의 算出에 있어 政府 노임단기기준중 製造部門의 安全管理士 日當이 1萬 9,200원을 基準으로 支給하도록 되어 있는데 製造部門의 安全管理士란 動物管理와는 전혀 이질적인 職種인데 어떻게 해서 動物管理인 또는 委託保護手數料 포획인부의 노임은 製造部門의 安全管理士로 유추 적용했는지 答辯해 주시고, 다음은 政府 노임단기라는 것은 특수한 경우 일일 6時間을 제외하고는 일일 8時間을 基準해서 하루 노임을 計算 支給하는데 일일 勤務時間 8時間 이외의 勤務時間에 대하여는 그 노임을 어떻게 支給할 것인지 그 基準이 이 條例上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方法을 答辯해 주시고요, 또한 委託 管理手數料를 安全管理士 노임 일일 1萬 9,200원의 20/100으로 정했는데 그 算出根據